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511 |
|----------|-----|

2023년 3월 1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이새날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수정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새날 의원)

1. 제안이유

- 통학로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학생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학생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범위를 학교 내는 물론 학교 밖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교통 안전대책 수립을 하기 위함.

-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통학로 내 교통사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학생 교통사고 위험 관리 대상을 학교 밖으로 범위를 확대함(안 제1조)
- 나.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다. 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에 포함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학교교통안전실태조사 실시와 결과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마. 교통안전지도와 교통안전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바. 통학로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사.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0조)
- 아.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경비 지원을 규정함(안 제11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이재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511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통학로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최근 5년간 어린이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대비 매년 0.2%씩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년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0년부터 시행되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¹⁾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한 논의와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에 대한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 '서울 스쿨존 25곳, 4년간 2차례 넘게 어린이 교통사고', KBS,2022.12.20. 윤아림 기자 기사, '오후 3시 하교하던 9살, 스쿨존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 숨져', 한겨레, 2022.10.28., 최상원 기자 기사, '민식이 법에도 등굣길 사고 빈발...차도-보도 분리 지지부진 탓', 한겨레신문, 2023.2.1.,곽진산 기자 기사

[표-1]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추세2)

▶연도별 사고 발생현황

(단위: 건 명)

| 구분 | 전체교통사고 | | | 어린이교통사고 | | | | | | 어린이보호구역내 12세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 | |
|-------------|----------------|--------------|----------------|--------------|------------|-----------|------------|---------------|------------|-------------------------------|----------|------------|
| | 사고 건수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 사고건수 | | 사망자수 | | 부상자수 | | 사고 건수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
| | | | | 건 | 점유율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 | | |
| 2017 | 216,335 | 4,185 | 322,829 | 10,960 | 5.1 | 54 | 1.3 | 13,433 | 4.2 | 479 | 8 | 487 |
| 2018 | 217,148 | 3,781 | 323,037 | 10,009 | 4.6 | 34 | 0.9 | 12,543 | 3.9 | 435 | 3 | 473 |
| 2019 | 229,600 | 3,349 | 341,712 | 11,054 | 4.8 | 28 | 0.8 | 14,115 | 4.1 | 567 | 6 | 589 |
| 2020 | 209,654 | 3,081 | 306,194 | 8,400 | 4.0 | 24 | 0.8 | 10,500 | 3.4 | 483 | 3 | 507 |
| 2021 | 203,130 | 2,916 | 291,608 | 8,839 | 4.4 | 23 | 0.8 | 10,978 | 3.8 | 523 | 2 | 563 |

▶사고시상태별

(기준: 2021년, 단위: 건)

| 구분 | 사 망 자 수 | | 부 상 자 수 | |
|---------|---------|--------|---------|--------|
|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
| 계 | 23 | 100 | 10,978 | 100 |
| 자동차 승차중 | 6 | 26.1 | 6,266 | 57.1 |
| 이륜차 승차중 | 0 | 0.0 | 6 | 0.1 |
| 자전거 승차중 | 6 | 26.1 | 1,137 | 10.4 |
| 보행중 | 10 | 43.5 | 2,529 | 23.0 |
| 기타 | 1 | 4.3 | 1,040 | 9.5 |

▶시도별

(기준: 2021년, 단위: 건)

| 구분 | 사고건수 | | 사망자수 | | 부상자수 | |
|----|-------|--------|------|--------|--------|--------|
| | (건) | 점유율(%) | (명) | 점유율(%) | (명) | 점유율(%) |
| 계 | 8,889 | 100 | 23 | 100 | 10,978 | 100 |
| 서울 | 1,026 | 11.5 | 2 | 8.7 | 1,243 | 11.3 |

○ 이에 따라 국회에는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³⁾ 및 교차로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⁴⁾이 제출되었으며,

2) 사이버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관련 통계 참고

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634, 제안일 2023.1.26., 제안자 태영호 의원 등 10인)

정부에서도 지난 2020년 5월 제정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6년까지 제로로 줄인다는 목표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⁵⁾을 수립·발표하였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고, 보도 신설과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영과 어린이 승하차 구역 확대 등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⁶⁾을 수립하여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23년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초등학교 통학안전 관리 강화 계획’ 등을 통해 스쿨존 내 등하굣길 교통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의 교통안전 점검⁷⁾을 실시하기

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630, 제안일 2023.1.26., 제안자 태영호 의원 등 11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9683, 제안일 2023.1.30., 제안자 강득구 의원 등 35인)

5)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 관계부처 합동, 34~42쪽.

‘정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최초 법정계획으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수립-’,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8.12.) 참조

□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

*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신호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층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활성화하고,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

6) ‘어린이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 최우선 확보...맞춤형 관리 추진’,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보도자료(2023.2.22.) 참조

7) ‘2023년 학교 주변 교통안전 점검 확대 계획’,정책·안전기획관 보도자료(2022.12.12.) 참조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3. 1. ~ 6. ※ 점검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대상학교 : 총 605개교

- 변경 전 계획 : 50개교, 변경 후 : 초등학교 전체(605교)

▶ 점검방법 : 교통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 점검 실시

▶ 초등학교 전체 학교 주변 점검 결과 및 개선 요청사항 유관기관에 통보

*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로 하였으며, 민·관·학 협력을 통한 현장 중심의 스쿨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책을 덧붙이거나 처벌강화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바, 학생의 교통안전에 대한 통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런점에서 동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통안전교육, 대책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교통안전지도 및 안전교육과 통학로 안전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1조는 예산지원의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⁸⁾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⁹⁾을 준수하고 있어 조례 구성 및 형식적 측면에서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9)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2) 조례안 제명에 관한 의견

- 동 조례안의 제명은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고유한 이름으로서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도 대표성 있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바, 이러한 측면에서 동 조례안의 제명은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현되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동 조례안의 규율 내용은 주체가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 소관의 조례와 달리 조례의 제명이 ‘서울특별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조례의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포함해 규정해야 한다는 강제적 법적 근거는 없으나, 조례는 법령과 달리 규율하는 적용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및 소관 범위에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의견 16-0183.).

따라서 동 조례안의 제명을 법제처의 의견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의 구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책무 규정에 관한 의견(안 제3조)

- 안 제3조는 학생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에 대한 책무를 각 항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항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각호에 규정된 단체와 협의를 통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3조의 책무규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통학로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책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동 조례안의 입법목적은 달성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의미¹⁰⁾가 있다 할 것입니다.

○ 다만 안 제1항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 간 협의에 따라 시책을 마련”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력단체의 범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각호에서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 본문의 협력단체는 규율 내용의 성격과 의미상 각호에 규정된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협력단체’ 를 ‘다음 각호의 협력단체’ 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안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명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 ‘한국교통안전공단’ 과 같은 실제 기관 명칭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바, 각호에 정확한 기관명을 명시하는 것이 명확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도 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협력단체’ 를 ‘각 호의 협력단체’ 로, 그리고 각호에 규정된 기관의 명칭 중 ‘서울특별시소방본부’ 를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 로 하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2023.2.13.)

4) 본칙 규정에 관한 의견(안 제5조~안 제9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지도, 그리고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6조는 교통사고 현황 및 개선 등에 대한

10)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99쪽 참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학교장의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범위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안 제9조는 통학로 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각각의 조문 규정은 동 조례안의 내용이 되는 실제 규정으로서 동 조례안의 제정 목적인 학생의 교통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기능과 효과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안 제7조제2항에서는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규칙을 인용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는 이러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은바, 명확한 법규를 인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통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8조제3호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에 대하여 ‘스마트폰’을 ‘휴대용 기기’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2023.2.13.)

그러나 교육부의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 훈련 매뉴얼’ 중 교통안전에 관한 지도요령에 따르면 ‘통학로 도로 횡단 중 스마트폰과 이터폰 등 기기 사용을 금지’ 처럼 스마트폰을 특정해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에 대한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원안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예산 지원 규정에 관한 의견(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안전시설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설치·관리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무를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동 규정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0호에서는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문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실제 교육감에게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교육감에게 예산 지원을 규정한 안 제11조는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 동 조례안의 제명 중 “서울특별시” 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으로 수정함.

- 안 제3조제1항의 본문 및 각 호에 규정된 협력단체의 범위와 단체명, 그리고 안 제7조제2항 중 인용된 조례명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511 |
|----------|-----------|

제안연월일 : 2023년 3월 10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는 규율하는 적용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및 소관 범위에 제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업무의 구분을 고려하여, 동 조례안의 제명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수정함.
- 또한 동 조례안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협력 단체명, 그리고 인용 조례명의 오기를 각각 수정함.

2.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의 제명 중 “서울특별시”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함(안 제명).
- 동 조례안에 규정된 협력단체의 범위와 기관명, 그리고 인용 조례명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2호~제4호, 안 제7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서울경찰청
3. 서울소방재난본부
4. 한국교통안전공단

안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 원 안 | 수 정 안 |
|--|---|
| <p><u>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u> <u>교통안전 조례안</u></p> | <p><u>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u> <u>교통안전 조례안</u></p> |
|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p> | <p>제3조(책무) ① ----- ----- ----- <u>위하여 다음 각 호의</u> ----- ----- ----- ----- -----.</p> |
| <p>1. (생 략) 2. <u>서울특별시경찰청</u> 3. <u>서울특별시소방본부</u> 4. <u>교통안전공단</u> 5. (생 략) ② (생 략)</p> | <p>1. (원안과 같음) 2. <u>서울경찰청</u> 3. <u>서울소방재난본부</u> 4. <u>한국교통안전공단</u> 5. (원안과 같음) ② (원안과 같음)</p> |
| <p>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생 략) ② 학교장은 「<u>서울특별시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u>」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의</p> | <p>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 「<u>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u>」 ----- ----- ----- -----</p> |

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생략)

-----.

③ (원안과 같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 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 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 시설물 개선,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2. 서울경찰청
3. 서울소방재난본부
4. 한국교통안전공단
5.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3. 교통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
2. 학생들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
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들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1. 자전거 및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2.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전동킥보드(PM), 바퀴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
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

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
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자치구와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